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9.

복지문화 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9. 18.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
- 발 의 자: 김정희 의원 등 7명
- 발의일자: 2025. 9. 3.(수)
- 회부일자: 2025. 9. 3.(수)
- 검토기간: 2025. 9. 3.(수) ~ 9. 12.(금)

2. 제정이유

- 본 조례안은 약물, 도박, 알코올, 흡연, 인터넷, 스마트폰 등 다양한 중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중독 예방과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건전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다.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 라.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4. 검토의견

- 이 제정조례안은 청소년들의 마약, 도박, 인터넷 중독 등이 증가되고 현실적인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어,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중독문제의 예방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은
 - 안 제4조에서 중독 예방 및 교육, 협력체계 구축,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다양한 중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중독 예방을 위해 관련 전문가 등에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7조에서는 중독 예방 및 교육 등 관련사업 수행 기관·단체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중독 예방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또한, 2025년 청소년 통계(2024년 기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42.6%(전년대비 2.5% 증가)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이 가운데 5.1%는 고위험군으로 나타났으며, 중·고등학생 3.6%가 30일 내 흡연, 9.7%가 30일 내 음주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본 제정조례안은 이러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적법하게 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 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을 예방하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환각물질 중독치료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독정신의학 또는 청소년정신의학 전문의 등의 인력과 관련 장비를 갖춘 시설 또는 기관을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이하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 검사,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의 중독 여부 판별 검사

2. 환각물질 중독으로 판명된 청소년에 대한 치료와 재활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에 대하여 본인, 친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신청, 「소년법」에 따른 법원의 보호처분결정 또는 검사의 조건부기소유예처분 등이 있는 경우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에서 중독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검사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환각물질 중독자로 판명된 청소년에 대하여 본인, 친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신청, 「소년법」에 따른 법원의 보호처분결정 또는 검사의 조건부기소유예처분 등이 있는 경우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에서 치료와 재활을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치료 및 재활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경우에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 ⑤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지정·운영, 중독 판별 검사 및 치료와 재활, 친권자 등의 신청 및 자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이하 “생애주기”라 한다)에 따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울·불안·고독 등의 정신건강상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